

7. 목회지도자과정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목회지도자과정(이하 “본원 과정”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원칙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립목적) 본원은 목회후보자의 신학교육, 교단 및 개교회와의 협동과 관계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위치) 본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길 359(대림3동 665-10)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5조(과정) 본원에는 목회지도자과정(목지과)과 국내외의 세미나 및 강의를 실시하는 연구 과정을 둔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

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“이하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외의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7조(당연직위원) 본교의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8조(심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
-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- ④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
- ⑤ 규정의 수립과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원이 속한 대학원의 보직인사이동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장 학사운영

제11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세부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업시기) 본원의 수업은 여름, 겨울방학 기간동안 집중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수업연한) 본원의 세부과정별 수업연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원장이 결정한다.

제14조(지원자격)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목회후보자(지망자) 및 목회자, 국내외 신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타 교단 목회자에 대하여는 조항 추가 및 입학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선발방법) 본원의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원절차)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수강료)

- ① 본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수강료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(강의배정) 강사는 본교의 전임교원과 외부 위촉강사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9조(시간계정)

- ① 강사료의 산정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.
- ② 공동강좌는 담당교수 수로 나누어 시간계정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(외래교수 위촉) 외래교수는 개강 1개월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원장이 위촉한다.

제21조(평점) 본원의 전과정은 **4.3**만점으로 등급표는 아래와 같다.

등급	A+	A	A-	B+	B	B-	C+	C	C-	D+	D	D-	F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	2.0	1.7	1.3	1.0	0.7	0
점수	97-100	92-96	89-91	85-88	80-84	77-79	73-76	68-72	65-67	61-64	56-60	50-55	0-49

제22조(수료 및 수료증교부)

-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기간을 수학한 후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써, 수료식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수료자에게는 본교 총동문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4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23조(수강생 지도)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24조(자치회)

- 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부회장, 총무, 서기 각 1인을 둔다.

제25조(학습자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26조(장학금)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본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한다. 본원 재학생 및 수료생이 본교 타과정에 진학 할 경우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.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7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5장 회계

제28조(회계년도) 본원의 회계년도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9조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0조(수입원)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① 수강료

- ②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보조금
- ③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 시)
- ④ 기타 수입

제31조(회계집행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.

제32조(준용) 본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원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